

2025년 4월 14일(월) 정기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14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부산광역시 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중소기업인지원과 사회적경제팀

유 형 : 모집

사진유무 : 사진있음 사진없음

과장	최정옥	051-888-4780
팀장	박화영	051-888-4763
담당자	손원석	051-888-4764

부산시, 「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」 공모사업 추진

- ◆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4.14.부터 사업 시행 공고
- ◆ 총사업비 2억 8천5백만 원을 투입해 20개 기업에 1천만 원~2천만 원 지원... 지원 대상은 ▲(예비)사회적기업 ▲마을기업 ▲사회적협동조합 ▲자활기업(법인)
- ◆ 공모 신청은 4.21.~5.2. 사회적기업 포털(www.seis.or.kr) 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

- 부산시(시장 박형준)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「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」을 추진하며, 오늘(14일)부터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.
 - 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,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.
 - ‘사회적경제기업’이란,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·자율적·민주적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, 지역경제 선순환,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시는 총사업비 2억 8천5백만 원(시비 2억 원, 구·군비 8천5백만 원)을 투입해 경쟁력있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20개 기업에 기업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.
 - 지원 대상은 ▲(예비)사회적기업 ▲마을기업 ▲사회적협동조합 ▲자활기업(법인)이다.
 - 사업비는 기술개발, 품질개선, 시제품제작 등 사업개발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- 사전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6월 초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.



- 사업 시행 공고문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(www.busan.go.kr/nbgosi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공모 신청은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(www.seis.or.kr) 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.
-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중소기업지원과(☎ 051-888-4764) 또는 구·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.

문의처 및 연락처					
부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과 (051-888-4764)					
구·군별	담당부서	전화번호	구·군별	담당부서	전화번호
중구	일자리경제과	600-4485	해운대구	일자리경제과	749-2906
서구	복지정책과	240-4318	사하구	경제일자리과	220-4484
동구	일자리경제과	440-4235	금정구	일자리경제과	519-4852
영도구	경제산업과	419-4484	강서구	경제진흥과	970-4478
부산진구	일자리산업과	605-4344	연제구	일자리경제과	665-4542
동래구	일자리경제과	550-4931	수영구	일자리경제과	610-4825
남구	일자리경제과	607-4294	사상구	일자리경제과	310-4616
북구	일자리경제과	309-4349	기장군	일자리경제과	709-4397

-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“사회적경제는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,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영역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라고 전했다.

□ 추진배경

-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비재정지원 중단으로 지역 사회적경제업체 운영 어려움 호소
 - ▷ 국비지원 감소 이후 사회적기업 개수 감소(312→279, △10.6%)
- 기존 사회적경제 4대 재정지원 사업 중 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마련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계속 지원 필요

□ 사업개요

- 근거 : 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11조
- 시행주체 : 시, 구·군(공모)
- 사업비 : 285백만원(시비 200, 구·군비 85) ※자부담 10%별도
- 참여대상
 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 -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 -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
 -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
 -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(법인에 한함)
- 사업내용 : 기술개발, 품질 개선, 시제품개발,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지원
 - ※ 인건비, 관리운영비, 자본재 구입 등 사업개발과 관련없는 비용 지원 불가
- 추진방법 : 공모철자로 참여기업 모집 후 전문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(보조금 차등지급)

□ 추진일정

